



#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5-1-26	
제정일자	2022. 2. 16	
개정일자	일자	<u>2022. 6. 15</u>
	Ver.	<u>1</u>
페이지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의2(학점인정) 및 기타 학점인정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계고, 대학 및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정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학칙 제22조의2(교육과정 연계운영)]
2.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대학과 공동운영 교육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학칙 제22조의4(국내·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
3.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2년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입학자의 교양교과목 이수학점[학칙 제24조(교과이수단위)]
4. 국내·외 다른 대학(교) 연구기관, 산업체에 파견되어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기제 현장실습(인턴십)을 수행하는 경우[학칙 제27조의2(학점인정)]
5.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거나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학칙 제27조의2(학점인정)]
6. 고등학생이 본 대학교 입학 전 대학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교육과정(대학과목 선이수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학칙 제27조의2(학점인정)]
7.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학칙 제27조의2(학점인정)]
8.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학사에 관한 내규 제9조(편입학 및 대졸자 입학자의 수강신청)]
9. 고등학생이 본 대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학사에 관한 내규 제9조의2(고교재학 중 교육프로그램 이수장의 수강신청)]

**제3조(다른 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국내 다른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협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 및 학점 수는 소속 학부(과)에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은 본 대학교 학점인정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다른 대학 이수과목”)하고 합산·처리한다.
- ④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의 학생은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생에 한한다.
- ⑤ 본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는 해당 다른 대학에서 정한 방법 또는 협약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 ⑥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라 본 대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4조(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의 학점인정)**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2년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

목 학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필수 교과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1.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만 인정하며 성적은 총 취득학점만 표기한다. <개정 2022. 6. 15.>
  - 1) 2년제 8학점 이내
  - 2) 3년제 12학점 이내
  - 3) 4년제 25학점 이내
2. 1학년 1학기(신입학)에 1회 신청 가능하며, 편입학 신입생은 제외한다.
3. 교양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양학점 인정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학처로 제출한다.

**제5조(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 군복무 기간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학기당 6학점, 년 12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성적부여는 등급, 이수구분은 전공·일반선택으로 표기한다.
2.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교학처로 제출한다.

**제6조(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료자의 학점인정)**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위탁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의 위탁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서 동일 교과목을 40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만 인정하고, 성적등급은 이수한 교과목의 원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 한다.
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학부(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부(과)에서는 학점인정 평가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한다.

**제7조(인정기준)** ① 학점인정과정의 교과이수 단위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학점인정과정의 성적부여는 등급 또는 P/F로 한다. <개정 2022. 6. 15.>
- ④ 이 규정에 의거 부여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인정범위)** ① 학점인정과정의 범위는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22. 6. 15.>

학점인정과정	학점인정범위	교과이수구분	성적표기(등급)	수강최대학점포함여부
교육과정 연계	졸업학점의 1/2 이내	교양,전공	등급	
국내·외 협약대학	졸업학점의 1/2 이내	교양,전공	등급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적대학 교양학점인정	교양 졸업학점 이내	교양	-	미포함
교환(유)학생 학점인정	학기당 20학점 이내	교양,전공	등급	-
해외연수 학점인정	졸업학점의 1/2 이내	교양,전공	등급	-
학기제현장실습 (국내·외 인턴십)	졸업학점의 1/2 이내	전공	등급	-
군복무 중 학점취득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전공,일반	등급	미포함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최대 9학점 이내	전공	등급	포함
선행학습경험인정(RPL)	졸업학점의 1/4 이내	전공	<u>등급,P/F</u>	포함
편입학 학점인정	전적대학 이수학점	교양,전공	해당대학	-

			기준	
고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최대 3학점 이내	교양	<u>P/F</u>	포함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의 학점인정)는 2021학년도 이전 재학생의 경우 이전 교양학점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하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점인정 평가서

1. 기본정보	학부(과)명		평가년도-학기	
	성 명		학번	
	평가위원	/	평가일	년 월 일

2. 평가 사항	교 과 목		과목코드	
	학점		수업시수	이론( ) / 실습( )
	일반고-위탁기관 협약서	<input type="checkbox"/> 있음(인정) <input type="checkbox"/> 없음(불인정)		
	이수시간	시간		
	성적증명서	점		

3. 종합판정	과목 종합 평가	<input type="checkbox"/> A+(95~100) <input type="checkbox"/> A(90~94) <input type="checkbox"/> B+(85~89) <input type="checkbox"/> B(80~84) <input type="checkbox"/> C+(75~80) <input type="checkbox"/> C(70~74) <input type="checkbox"/> D+(65~69) <input type="checkbox"/> D(65점 이하)
	종합 논평	
	권고 사항	

평가위원	학부(과)학점인정심의 위원: (인)	평가결과 최종확인	학부(과)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학부(과)학점인정심의 위원: (인)		
	학부(과)학점인정심의 위원: (인)		